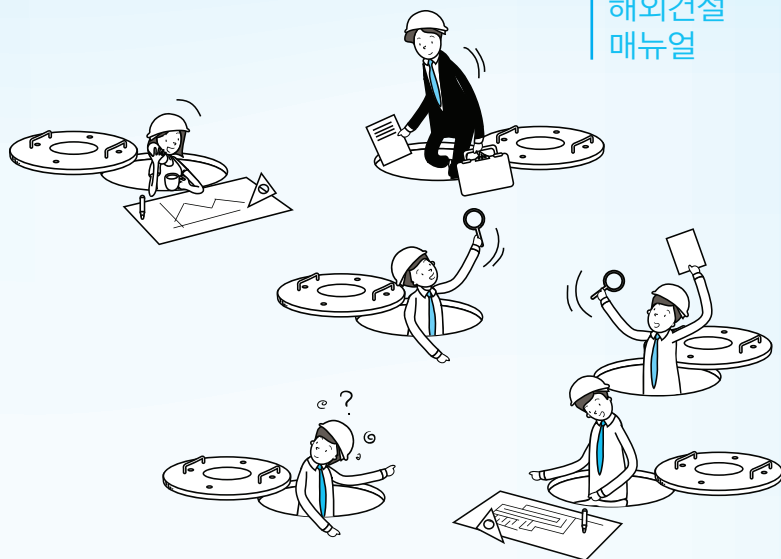


해외건설현장 사고 상황 대비 초동조치 매뉴얼

자료제공 :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



1. CASE 1 : 테러 · 피습으로 인한 사상자 · 피랍 발생(이번 호)
2. CASE 2 : 자연재해 · 사고로 인한 사상자 발생
3. CASE 3 : 전염병으로 인한 사상자 발생

국토교통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재난안전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안전 혁신대책을 마련하고 분야별로 초기대응에 꼭 필요한 내용만 핵심적으로 담은 초동조치 매뉴얼을 발표했다. 이 중 하나로 해외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나 피습, 자연재해, 전염병 등 재난에 대해 해외 건설현장 및 건설사, 해외건설 관련 유관기관 및 정부에서 조치해야 하는 4단계 대처 사항을 책자로 만들어 배포했다. 본지는 해외에 시공현장이 있는 회원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초동조치 매뉴얼을 연재한다[편집자주]

I 초동조치 매뉴얼

Case 1 테러 · 피습으로 인한 사상자 · 피랍 발생

① 개요

○ '00년 00월 00일 A국 00건설 0000현장이 무장테러단체에 피습되어 우리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, 14명이 부상하였으며, 3명이 피랍됨

② 세부내용

- 일시 : 00. 00. 00(월요일) 13:30
- 위치 : A국 00건설 0000현장 내
- 피해내용
 - 인명피해 : 2명 사망, 14명 부상, 3명 피랍
 - 차량피해 : 중장비 차량 파손
 - 시설피해 : 공사시설물 일부 붕괴 및 화재 발생

③ 조치사항

- 현지 경찰 및 의료기관에 상황전파 및 시신수습
- 부상자 및 잔여 근로자 안전지역으로 대피(현장 내)
- 현지공관, 외교부, 국정원(대테러정보센터)과 협조체제 구축(관계부처 합동)
- 피랍자 구출을 위한 테러단체와의 협상 준비
- 근로자 인적사항 확인
- 사태 진전 시 관련 내용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 등

1. 주요사항

* 처리시한은 참고사항이며,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단계별 조치 수행

(1) (1단계 : 30분 이내) 응급조치 및 발생상황 신속 전파(先조치 後보고)

- 관계기관에 상황을 즉시 전파하고 비상연락망 가동
 - ① 현지 경찰 등, 의료기관 → ② 발주처, 재외공관, 본사(지사) → ③ 외교부, 국정원, 국토부(해외건설협회) 순으로 연락
- *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, 해외건설업자는 '시공상황, 공사내용 변경 및 해외공사에 따른 각종 사고'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특히 각종 사고의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음

(2) (2단계 : 1시간 이내) 현장 내 대피 등 잔여 근로자 안전 조치

- 잔여 근로자를 사전에 지정한 대피장소로 즉시 이동
- 현지 의료기관, 소방서 출동 전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호활동

(3) (3단계 : 3시간 이내, 4단계 : 6시간 이내) 현장상황 재확인 및 철수 여부 결정

- (현장 대기시) 비상 대피장소에서 질서유지, 피랍자 정보 전파

- (현장 철수시) 대피 인원확인 및 군경 에스코트 지원 확보
 - ※ (상황전파 즉시) 국토부 비상대책본부 설치·가동
- 상황 접수 후 장·차관 보고
- 외교부·재외공관, 국정원, 피해업체와 협조체계 구축
 - 현장 철수시 잔여근로자 제3국 또는 본국으로의 수송수단 확보
- 사상(피랍) 근로자 인적사항 파악 및 가족과 접촉 후 상황설명
- 사태 진전시 관련 내용 브리핑 또는 보도자료 배포

2. 초동조치 매뉴얼

구분		임무 및 역할(조치사항) - 1단계 / 30분 이내
해외 건설현장	사전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비상연락체계 구축(현지군경·의료·재외공관) ○ 현장철수 대비 이동경로 설정(현장 밖 대피캠프, 이동수단, 비상식량 준비, 예상대피경로 검토) * 현장 내 다수의 임시대피소에 우선 집결한 후 비상대피소 → 현장 밖 대피캠프로 이동 ○ 현장 비상대책반 구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책임자 설정, 개인별 업무카드 작성·숙지
	최초 상황 발생	○ 비상대책반 가동, 상황파악 및 보고 지시
	현장소장	
	관리팀장(부책임자)	○ ① 현지경찰/의료기관 → ② 발주처, 재외공관, 본사 → ③ 외교부, 국정원, 국토부(해건협) 순으로 연락조치
	안전팀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고 사이렌 발송 * 사전에 사이렌 유형에 따라 근로자가 사고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훈련 (예) 사이렌 1회 테러, 2회 피습, 3회 자연재해 등 ○ 현장 내 외곽 경비인력 증원 및 순찰강화 지시
건설업체	현지 지사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고체계에 따라 본사 담당자에게 상황전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현지경찰에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즉시 신고 및 발주처와 협조체계 구축 ○ 현지 공관에 관련 상황 통보 및 협조요청
	본사 담당자	
유관기관	제외공관	
	외교부·국정원	
국토부	(정)건설정책국장 (부)해외건설지원과장	

* 참고: 사건 · 사고보고양식(안)

국가 및 공사명	국가 :		공사명 :			
대인사고	사망	(명)	부상	(명)	부상정도	
대물사고	종류		피해액수			
사고경위						
기타사항						

구분		임무 및 역할(조치사항) - 2단계 / 1시간 이내
해외 건설현장	현장소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상자/피랍자 현황 및 현장피해정도 등 종합 진행상황 파악 지시 ○ 부상자/잔여근로자 현장 내 비상대피 지시
	관리팀장 (부책임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지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추가 구조 요청 - 현지 기관 연락 불가시 연락체계 순서에 따라 발주처, 지사, 대사관 등에 수시 상황보고
	안전팀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지 의료기관 등이 출동하기 전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호활동 실시(현장 내 대피장소로 이동 후) ○ 지시에 따라 사상자, 피랍자, 잔여 근로자 확인 → 현장소장, 관리팀장에게 동시 보고
건설업체	현지 지사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장연락 및 모니터링 조직 가동 ○ 본사 · 현지 공관에 구체적인 상황 보고
	본사 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외교부와 국토부(해건협), 국정원에 상황전파 ○ 현지 발주처, 가능하다면 정부와 연락체계 구축
유관기관	제외공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지 정부, 군 · 경에 대한 협조 요청 ○ 외교부와 국토부에 즉시 상황 전파 * 현장인력이 적을 경우, 대사관 직원 파견 검토
	외교부 · 국정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재외국민보호 위기대응 매뉴얼」 가동 ○ 관계기관에 상황 전파 및 협조체제 구축 ○ 국외테러대책본부 설치 ○ 테러리스트 배후단체 등 관련 정보 수집
국토부	(정)건설정책국장 (부)해외건설지원과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 · 차관 보고(건설정책국장, 또는 해외건설지원과장) 관련기관(국토교통 비서관실, 국가안보실 등) 상황 전파(수시) ○ 국토부 비상대책본부 설치 ○ 본사 · 지사와 협조체계 유지(해건협)

구분		임무 및 역할(조치사항) - 3단계 / 3시간 이내
해외 건설현장	현장소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장 또는 비상대피 장소에서 통제 및 질서유지 ○ 관련기관에 현장상황 보고(피랍자 신원 등) ○ 부상자 구호, 사망자 수습(현지 의료기관 협조)
		<table border="1"> <tr> <td>현장 철수시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긴장상황 고조시 현장 철수 여부 결정 - 대피 전 공사 필수요원 선정(상황에 따라 유동적) - 수송수단, 이동경로, 비상식량 등 상비물품 확보 </td> </tr> </table>
현장 철수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긴장상황 고조시 현장 철수 여부 결정 - 대피 전 공사 필수요원 선정(상황에 따라 유동적) - 수송수단, 이동경로, 비상식량 등 상비물품 확보 	
건설업체	현지 지사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장·병원 등에 직원 파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상자 신원·피해상황 파악 ○ 발주처·본사에 현재 상황 보고
	본사 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관, 국정원, 본사와 협의하여 안전 이동경로 협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종 대피지역 → 제3국 또는 본국 수송수단 협조요청 ○ 동일국가 타 현장에 전파, 현지 정부에 긴급구호 요청 ○ 외교부와 국정원, 국토부(해건협)에 상황전파 ○ 발주처에 이동인원, 방법, 수단 등에 대해 알리고 지원을 요청
유관기관	제외공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테러단체 접촉을 위해 현지 정부의 협조 요청 ○ 다른 현장 및 주재국 교민에게 안전조치 당부 ○ 인질납치 관련 협상 전문가 수배 ○ 제3국 또는 본국으로 이동을 위한 주재국 내 집결 포인트 검색 및 제안
	외교부·국정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피랍 근로자 구출대책 마련(국정원 협조) ○ 테러리스트 배후단체 등 관련 정보 수집
국토부	(정)건설정책국장 (부)해외건설지원과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(상황개요 파악시, 상황변화시, 종료후) * 외교부와 언론대응부처 협의 필요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피경로 확보 필요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 대책반 현지 급파 검토 ○ 항공(항공정책실), 해운(해수부 해운정책과), 육로 운송(외교부) 관련 대응 방안 모색

구분		임무 및 역할(조치사항) - 4단계 / 6시간 이내
해외 건설현장	현장소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사 진행현황, 피해상황 확인 작업 착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작업일지 확보, 피해시설 촬영 등 조치 ○ 부상자 구호 및 시신 수습(현지 의료기관 협조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사필수요원을 제외한 인원 이동 준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지 경호업체와 최종 협의 후 이동
건설업체	현지 지사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발주처·본사에 피해현황 상황보고 ○ 최종 대피지역으로 직원 파견 ○ 현장 내 공사필수인력과 연락체계 유지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외교부와 국정원, 국토부(해건협)에 상황전파 ○ 대피 경로상 안전확보를 위해 현지 정부에 협조 요청 ○ 현장 내 공사필수인력과 연락체계 유지 ○ 관리책임자 현지 파견

구분		임무 및 역할(조치사항) - 4단계 / 6시간 이내
유관기관	제외공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테러단체와 연락채널 확보 및 요구조건 확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테러단체가 인질에 대한 협상 요청 시 인질의 생사여부를 확인하고, 전문가, 외교부, 본사와 대처방안 협의 제3국 노동자 대피 관련 주재국 협조 요청
	외교부·국정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종 대피지역으로 직원 파견 지사, 현장 내 공사필수인력과 연락체계 유지 잔여 근로자 수송을 위한 대책 협의 피랍 근로자 구출대책 시행(국정원 협조) 해당지역 여행자·체류자 대상 대피 SMS 발송 항공사와 전세기 수송협의 개시
국토부	(정)건설정책국장 (부)해외건설지원과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(상황개요 파악시, 상황변화시, 종료후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피경로 확보 필요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 대책반 현지 급파 해외건설근로자 해당국 입국금지 조치(외교부 협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국가내 타 건설현장 공사중단 조치(업체 협의) 수송항공편에 대한 운항허가, 안전성검토 및 총괄지휘 해운사(해수부), 인근 군함·군용기(국방부) 파견대책 검토

주요 · 유관기관 연락처

● 국토교통부

구분	전화	팩스
행정사무관	044-201-3529	044-201-5547
행정주사보	044-201-3534	

● 유관기관

기관명	관련부서	전화	팩스
외교부	재외국민보호과	02-2100-7588	02-2100-7974
	여권과	02-2100-7592	02-722-8489
	재외동포영사대사	02-2100-8053	
	국제안보과	02-2100-7283	
문화체육관광부	종무2담당관	044-203-2321~6	044-203-3463
보건복지부	비상안전기획관	044-202-2391~5	044-202-3922
	질병관리본부	043-719-7240~51	
해외건설협회	지역2실	02-3406-1091, 71	02-3406-1126
KOICA	해외관리팀	031-740-0592	031-740-0597
KOTRA	비상계획실	02-3460-7051	02-3460-7909
대한적십자사	재난구호팀	02-3705-36914	02-3705-3639